

PHT, Incorporated

tax:104-81-63738 tel:82-10~2046~0721 eml:<100@pht.kr> web: www.pht.kr

곡물 공급 계약서

계약연번: PH25-0101

제 01 조. 계약의 목적:

하기 대한농산㈜(이하 갑)과 평해상사㈜(이하 을)는 곡물 공급계약을 체결한다.

제 02 조. 원산지 증명: 원산지 증명에 관한 책임은 "을"에게 있으며, 갑은 그 책임이 없다.

제 03 조. 품질규정

*1.발아율: 녹두를 40~50C 수온에 30분 불려 +97%/A+, +94%/A-, +92%/B+ 이상 정상이어야 된다. *2.구분율: 80% 이상. 곡물의 얇은 직경기준으로 나누어 분리 포장한다. 예, -3.6, -4.0, +4.0mg *3.반품: 발아율. 구분율. 품질. 가격 등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. 같은 을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04 조. 견적(주문-운송), 결제-외상-연체

*1.견적-주문-운송: 을은 대상 물품에 대하여 샘플을 근거로 견적을 제시한다. 갑은 샘플이나,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문자로 주문한다. 견적-주문을 근거로 운송한다.

*2.품질: 갑은 물품 하차(수령)전에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결정/대금지불 한다

*3.결제: 갑이 정한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함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제 한다.

*4.외상: 양자 협의하여 매월 정해진 날에 결제함을 원칙으로 정한다. 단, 용송기준 30일 이내에 결제한다 *5 여체: 30일 이상 여체학 경우 우속일로부터 목품대금에 여러 20%의 여체적를 같은 음에게 지불하다

제 05 조. 주문계약/취소

*1. 거래기순: 공급사, 수입사, 품명, 수량, 가격, B/L 등 일원회된 X/O(purchase order)를 기준으로 한다.. *2. 체결: 거래량, 가격, 원산지 등을 구두로 정하고, P/O 에 ฮ/ 지고 문자/이메일 등, 서면으로 확인한다

*3. 납품기한: 물류기간은 페루/45일, 중국/15일을 기준으로 성고 10일이상 지연될 경우 을은 갑에게 통보 수이용 받아야 되다

*4. 계약금: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은 율에게 계약금의 40%를 예치한다.

*5. 배상금: 같이 계약을 위반하면, 예치금은 올에서 막은 무대, 을이 위반하면 같에게 예치금의 2배를 배상한다

제 06 조.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

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 07 조. 계약기간

*1.발효: 서명란의 계약서 날인일

*2.해지: 미수.미지급금 없는 상태해서 상대에게 서면. email. 문자 통보하며. 그 30일 후 해지된다.

*3.소멸: 마지막 거래 이후 2년간 거셨던 없을 경우, 본 계약은 자동 소멸된다

★4.원본: 증명을 위하여 본┛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 후 양자 1부씩 보관한다. (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)

제 08 조. 분쟁해결: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양자간의 분쟁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른다.

제 09 조. 연대보증 및 담보: 성명, 주소, 주민번호, 전화번호, 서명(모두 자필): 보증/담보 없음. 현금결제로 함.

제 10 조. 서명

갑	대한농산 123-45-67890	을	평해상사㈜ 안지현대표 104-81-63738
주소	서울시 강남구 양재동	주소	서울 중구 을지로 12 길 28, 제이매크로 2 층 288 호
담당		담당	7,11-11-11-11-11-11-11-11-11-11-11-11-11-
email	<대한농산@naver.com>	email	<100@pht.kr www.pht.kr>
날짜	2025.01.01.	날짜	2025.01.01.
서명		서명	